

의안번호	2218362
의 퇴 인	백종헌 의원
회 답 일	2026.6.5.
추 계 번 호	26C2202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의3 (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)	○ (제1항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·유통 근절,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생산·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.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3.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.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. 화장품의 허가·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.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○ (제2항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·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(이하 “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○ (제3항)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의3 (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·유통 근절,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화장

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임

- 구체적으로는 정보 모니터링,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,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,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6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「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」 중 CGMP 및 할랄 화장품 인증 컨설팅(590백만원),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회(ICCR) 활동 및 국제협력(698백만원)이 있음

-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진 대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, 경비를 지원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